

【민사집행법 35문】

【문 1】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면 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은 압류하지 못한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지만,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는 없다.
-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 2】배당받을 채권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공동근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을 민법 제36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별로 나누어 각 환가대금에 비례한 액수로 배당받으며, 공동근저당권의 각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이른바 누적적으로 배당받지 아니한다.
- ②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이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근저당권 목적 부동산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하여 배당받을 수는 있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⑤ 부동산에 관한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에 의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문 3】경매절차에서의 매각대금지급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된 후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면 그 기한지정은 효력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 여기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이란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배당할 금액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기일에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③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더라도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하여 항고법원에서 그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위 추후보완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대금납부를 명하고 이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것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금납부로서 부적법하여 대금납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매수인은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데,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있다.

【문 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는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 시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④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문 5】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그 집행권원인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결정이 있으면, 위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집행절차가 중지되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뿐이고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②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 받은 다음날부터이다.
-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고,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 ⑤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문 6】보전처분의 당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청 당시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보전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그 명령은 당연히 무효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상속인은 그 무효인 보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청 당시 채무자가 생존해 있었으나 결정 당시에는 사망했고 그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히 무효로 된다.
- ③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지므로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④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수동채권이 가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문 7】甲이 乙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乙의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마쳤다. 乙은 가압류등기 이후 X아파트를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X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다른 채권자인 丁은 X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甲이 X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丙의 채권자 丁은 X아파트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③ 甲의 가압류집행이 형식적으로는 채권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도 법이 보호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가압류 이후의 소유권 취득자인 丙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무효를 주장하고 제3자로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 ④ X부동산을 취득한 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A가 X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X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甲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배당에 참가하여 위 근저당권자인 A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 甲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이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것으로서 乙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에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문 8】전부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부명령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다.
- ② 수익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 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므로 단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같다고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⑤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관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제법상 효력이 없다.

【문 9】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 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전유부분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한다.
- ② 압류의 효력발생 전후에 등기된 가압류등기는 매각에 의해 모두 소멸한다.
- ③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의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했다라도 우선 사망한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해야 하지만, 매수인이 대금지급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등본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매각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된다.

【문10】경매절차상 배당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 ②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 ③ 배당표에 대한 이의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데,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되면 선정자들이 아닌 선정당사자만이 이러한 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정당사자만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상대방이 된다.
- ④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 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와 배당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경매신청의 등기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종기까지 가압류 집행전에 가압류결정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문11】보전처분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소송사건을 수임받은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으로 발하여진 제소명령결정을 송달받을 권한에까지 미치고, 보전처분신청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당사자 선정행위의 효력은 제소명령신청절차에는 물론 보전처분취소신청사건에까지 미친다.
- ② 법인의 대표자 및 이사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자 등이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종전의 대표자 등이 사임하고 새로 대표자가 선임되었다라도 가처분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법인은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취소신청권은 보전처분신청에 기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소송절차상의 개개의 권리가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로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소명령 후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을甲에게 양도한乙이 채무자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丙이 이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甲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제소명령의乙지위를 승계하고, 양수인甲이 제소기간 내에丙을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제소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제소명령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건을 취득한 보전처분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문12】새매각 및 재매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기일의 공고·통지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생겨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는데, 착오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새매각을 실시하여 매각가격이 저감되기 전의 최저매각가격 이상이라도 새매각절차는 위법하다.
- ② 집행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매각을 불허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 ③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되어 집행법원이 매각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였다면 그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라도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⑤ 과잉매각으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불허가를 한 경우 매각허가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동산 모두를 함께 매각에 부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각불허된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전 매수인도 매수인 고를 할 수 있다.

【문13】보전처분의 특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전처분은 신속성을 위해 보전처분의 송달 전에도 집행을 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함으로써 그 토지가 甲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잠정적인 이행상태의 실현은 고려함이 없이 위 토지를 乙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제1심 변론종결 전에 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하여 이를 인도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에도 건물인도청구 부분의 소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법원은 건물의 멸실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 ④ 甲이 乙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乙은 실제 임차인이 甲의 아버지인 丙이라고 주장하면서 丙을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丙이 실제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후 丙이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와 같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거듭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甲이 신청한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합의재판부가 1개인 1심 법원에 합의신청사건이 접수되었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문14】강제집행의 신청 및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강제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후 기입등기 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의 사실을 알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압류가 있으면 경매신청 시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생기는데,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송달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야만 하고,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④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 시에 그 처분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 ⑤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민법 제365조의 요건을 갖춰 일괄경매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한다.

【문15】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및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집행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중지하였다가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는 경우, 채권자가 추가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해 달라는 취지로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배당이이의 소를 심리하는 법원은 추가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을 당초 배당표와 동일하게 배당하는 것으로 추가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 ②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러한 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자에게는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③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이의 소로써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이이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이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

【문16】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근로복지공단이 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어느 근로자에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체당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다른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과 서로 같은 순위로 배당받아야 한다.
- ③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다른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 ④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 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문17】민사집행법 제102조의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매수신청 및 보증제공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속행하되 매각기일에 매수신청가격 이상의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채권자를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하여 그 이름과 가격을 부른 후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우선채권자와 압류채권자가 동일인이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여러 개의 부동산 중 1개만이 경매되는 경우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개별매각되는 경우에는 각 경매사건마다 피담보채권 전액이 우선채권으로 계산되나, 개별매각되더라도 한 절차에서 동시배당의 가능성이 있으면 각 부동산의 부담부분을 계산하여 무잉여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집행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여러 채권 중 일부를 누락하여 무잉여 통지를 하고, 압류채권자가 통지 받은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잉여있을 가격을 정하여 매수신고를 한 때에도 집행법원은 우선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때에는 새로이 무잉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남을 가망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우선채권을 넘는 매수신고가 있으면 본조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고, 우선채권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8】부동산의 매각결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된 청구나 신청이 아니어서 경매법원은 이를 참고로 매각 허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그 이의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
- ②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매매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으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다.
- ③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자신이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각을 불허할 수 없다.
- ④ 매각허가결정정정결정의 고지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되므로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라고 볼 수 있다.
- ⑤ 매각허가결정이 있는 뒤에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19】경매절차에 대한 불복방법과 취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기된 사항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소송으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룰 수 있을 뿐이고,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말소촉탁을 구할 수도 없고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의 촉탁을 구할 수도 없다.
- ② 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으나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람은 경매취소신청을 통해 다룰 수 있다.
- ③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 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 ④ 강제경매신청을 인용한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
- ⑤ 학교법인 이학원이 학교용지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서 개시결정의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이 ‘甲학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甲학원의 전 이사장인 乙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문20】압류의 경합(이중경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행사건이 있음에도 후행사건에 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그 절차의 진행을 저지함이 없이 후행사건이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행 및 후행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 양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무잉여 여부를 판단한다.
- ③ 선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소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선행절차가 취소되어 후행절차로 진행 중 선행절차에서 변경된 주소가 아닌 종전의 주소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 ④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되어 후행사건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새로이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야 하고,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의 고지 또는 채권신고의 최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⑤ 후행사건은 선행사건이 정지·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할 수 있고, 후행사건이 취하된 후 선행절차가 정지, 취소 또는 취하되면 이후의 모든 절차를 정지 또는 종료하여야 한다.

【문21】보전처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해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처분채권자는 더 이상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② 보전처분의 취소절차에서 피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보전처분신청을 하였다라도 소송위임의 효력이 취소소송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보전처분신청을 대리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의 효력이 제소명령신청 사건에도 미친다.
- ④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한 채무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을 취할 수 있다.
- 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지만,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

【문22】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인 각자가 단독으로도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발령시의 실제적, 절차적 사항과 인도명령의 상대방의 점유권원의 존재를 들어 불복할 수 있으나, 매각절차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인도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③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점유자에 대하여도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채무자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점유자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인도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⑤ 인도명령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문23】배당요구종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②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보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③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문24】채무자 A 소유의 X아파트에는 甲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천만 원), 임차인 乙의 전입신고(임대차보증금 7천만 원, 대항력 갖춤), 丙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천만 원)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丙이 X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발령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X아파트가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면 乙의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② X아파트에 대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내기 이전에 甲의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하면 乙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 ③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해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乙이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乙의 임차권이 丁에게 인수된다.
- ④ 위 경매절차에서 X아파트에 대해 매각이 이루어져 최고가매수인인 丁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채무자 A가 甲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에 丁이 그 사실을 모르고 매수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 A는 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 ⑤ 최고가매수인인 丁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각부동산의 부담이 증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는 없다.

【문2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2항,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잠정처분을 하는 것은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기 전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한 이후에는 잠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②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③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한 등기부등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매각기일의 통지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경매개시결정 자체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 ④ 강제경매와 달리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는 매각기일의 공고, 통지 등에 관한 위법사유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⑤ 임의경매 매각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대항의 약정이 있어서 기존 채무가 소멸하였다면 그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있다.

【문26】채무불이행자명부 및 재산조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분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조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조회법원은 그 기관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27】민사집행절차의 불복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 ④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
- ⑤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문28】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매각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매각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유체동산집행 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

【문29】매각물건명세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제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

【문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전부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한다.
- ②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도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명령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물상대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③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등을 현실로 추심한 후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취할 수 없다.
- 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문31】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완납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권원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 ④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문32】강제집행의 개시요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수탁자가 파산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및 새로운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 ⑤ 허위주소로 송달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집행권원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무효이다.

【문33】보전소송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 ②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나 관할권 없는 법원이 발령한 보전처분도 상소나 이의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며,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확정되면 관할위반의 흠이 치유된다.
- ③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상고심에 송부되고 본안이 상고심에 계속 중일 때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으로서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2심법원이 보전처분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 ④ 본안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또는 상고로 인하여 기록이 송부되기 전이면 기록이 있는 당해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 ⑤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 개라도 이미 본안이 계속된 경우에는 본안이 계속된 법원만이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지고, 다른 법원에는 본안법원으로서 관할권은 생기지 않는다.

【문34】매각허가결정 및 그 불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지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없다.
- ③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균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문35】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 ②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 ③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다.
-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문36】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 및 선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 ①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 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는 할 수 없다.
- ② 외국회사 영업소의 경우 국내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과 회사설립의 준거법,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한다.
- ③ 영업소 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각종 첨부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에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37】민법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고, 채권자도 이에 포함된다.
- ③ 임시이사 선임결정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피선임자의 취임 승낙은 필요 없다.
- ④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통상 항고로써만 불복이 가능하며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
- ⑤ 임시이사의 지위는 정식의 이사와 동일하지만 임시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38】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주식회사의 분할등기, 유한회사의 자본금증가의 등기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 ③ 회사의 설립이나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등기할 사항이 등기된 후에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상업등기부의 기재는 모두 사실상의 추정력만 있을 뿐 법률상 추정력을 갖지는 못한다.